

성 \*창  
1964-02-16

울산광역시 북구 중산4길  
(중산동)

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2021년 03월 26일

농소2동장

